

문서번호 : SFT경영지원210226-001

작성일 : 2021-02-26

발신 : 서울화인테크(주) 대표이사

수신 : ○ ○ ○ 주주님

제목 : 제31기 정기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당사는 정관 제18조(주주명부의 폐쇄)에 따라 2021. 1. 1부터 정기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변경이 정지되어, 2020. 12. 31. 기준으로 확정된 주주명부를 바탕으로,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와 정관 제20조(소집)에 의거 제31기(2020. 1. 1 ~ 2020. 12. 31) 정기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1년 3월 15일(월)

○ 이 사 회 : 오전 10 시 00분

○ 주주총회 : 오전 10 시 30분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12 한주빌딩 2층 회의실

3. 회의 목적 사항

제1호 의안 : 제3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임기 만료 및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임원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기타 보고 및 협의 사항

4. 제2호 의안에 대하여

임원명	만료일자	승인안	비고
대표이사 최준걸	2021. 03. 22	중임	
사내이사 최준걸	2021. 03. 22	중임	
사내이사 김성용	2021. 03. 22	중임	

5. 제3호 의안에 대하여

구분	기본한도	승인안	지급총액
2020년도	2,000백만원	2020년도 세전이익의 20%내에서 성과배분	1,148백만원
2021년도	2,000백만원	2020년도 세전이익의 20%내에서 성과배분	

*임원: 등기이사 및 당사 기업활동에 대한 유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내 임원진

6. 제4호 의안에 대하여

- 건축 설계 및 공장형 건설업 등 건축 관련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건축사업부 신설 (2020.12.04 이사회 의결)에 따라 관련 정관의 주요 사업목적 추가 및 변경

조문	주요 변경 내용	비고
제2조 (목적)	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5. 건축용 금속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6.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 7. 기타 건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신설

[별첨] 1. 정관 변경 세부 내용. 참조

7. 의결권의 대리행사 :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일 3일 전 까지 지정 주소로 송부

2021년 2월 26일

서울화인테크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태남 (직인 생략)

[위 임 장]

위 임 주 식 수 : _____ 주

수 임 자(대리인) : _____ 주주

회사 정관 제23조(의결권의 대리행사)에 의거 본인의 의결권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1년__월__일

위 임 자 : _____ (인)

※ 배당금 지급 수령계좌 신고 : _____ 은행 _____

서울화인테크 주식회사 귀중

※ 1.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의결권 위임 여부를 사전 통지해 주시고, 본 위임장에 서명날인 후 회일 3일 전까지 당사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3길 12 한주빌딩 3층, 서울화인테크(주) 경영지원팀

Tel : (02)552-0424~9, Fax : (02)552-0430

[별첨] 1. 정관 변경 세부 내용

1) 제2조(목적)

변경 전	비 고	변경 후	비 고
1. 첨가제(윤활유, 연료유) 제조, 가공 및 판매업 2. 고무의 마스터벤티 제조 및 판매업 3. 고무듀브 제조 및 판매업 4. 첨가제(윤활유, 연료유) 수출입 및 알선업 5. 창고업 6. 유희착재 판매 및 알선업 7. 수출입 및 동대행업 8.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 9. 기자재, 전자재, 타이어류 제품,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10. 자동차부품 및 산업용 복합소재 제조 판매업 11. 목재료 수입 및 가공 판매업(빠라트) 12. 각종 화학,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13. 각종 촉매제 판매업 14. 각종 석유화학 및 합성고무 부산물 판매업 15. 부동산 중개 및 임대업 16. 정보통신 관련 상업 17. 생명공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18. 생물비료 및 동물사료첨가제 제조 및 판매업 19.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20. 정보처리기기 제조, 가공, 판매, 임대 및 수리업 21. 소프트웨어 개발, 판매 및 유지보수 서비스업 22.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관련 사업 23. 컴퓨터시설 관리업 24. 정보처리기술 용역업 25. 기타 각호에 관련된 용역 및 부대사업	1. 삭제 2. 변경 1 호에 포함 3. 변경 1 호에 포함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변경 11 호로 이동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변경 2 호로 이동 13. 삭제 14. 변경 3 호로 이동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20. 삭제 21. 변경 8 호에 포함 22. 변경 10 호로 이동 23. 삭제 24. 삭제 25. 변경 12 호로 이동	1.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 2. 각종 화학,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업 3. 각종 석유화학 및 합성고무 부산물 판매업 4.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5. 건축용 금속가공제품 제조 및 판매업 6.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 7. 기타 전자재 제조 및 도소매업 8.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 디지털 콘텐츠 개발 서비스업 10.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11. 수출입 및 동대행업 12. 기타 각호에 관련된 용역 및 부대사업	1. 신설 2. 내용 유지 3. 내용 유지 4. 신설 5. 신설 6. 신설 7. 신설 8. 신설 9. 신설 10. 내용 유지 11. 내용 유지 12. 내용 유지

2) 제20조(소집)

변경 전	비 고	변경 후	비 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 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①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 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② 전항의 소집은 회일의 2 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통지 발송으로 한다.	1 항 유지 2 항 신설 소집통지 방법 명시 (상법 제 363 조)